

# 투자신탁 약관 변경 내용

## 1. 대상 투자신탁 및 개요

(2007.11.15 현재)

투자신탁명	최초설정일	설정좌수
당신을 위한 N 재팬주식모투자신탁	2007-02-26	229,839,921,481

## 2. 약관변경 대비표

- 약관변경 내용 : 투자자문을 투자일임으로 변경
- 변경시행일자 : 2007년 11월 20일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제6조	<p>제6조(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업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<u>②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자산중 의화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등의 투자상담 및 조언 등을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수익자의 이익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자산운용회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의화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자산의 운용을 위하여 법 145 조 및 시행령제 1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다. 이경우 그 외국투자자문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계약을 제 3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③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,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·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. 다만,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중 해외 자산의 보관, 결제 등의 업무를 해외의 보관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투자신탁재산의 _____</p>	<p>제6조(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업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,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·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.</u></p> <p><u>&lt;단서조항 삭제&gt;</u></p> <p>③ 투자신탁재산의 _____</p>

	<p>_____ 약정에 의한다. 다만, 이 신탁약관과 위 약정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약관이 우선한다.</p>	<p>_____ 약정에 의한다. 다만, 이 신탁약관과 위 약정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약관이 우선한다.</p>
제6조의2	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의2(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)자산운용회사는 <u>법제176조와 시행령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[제35조제1항의 투자대상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]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및 조사분석 등을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업무의 위탁의 방법은 투자일임으로 한다.</u></p>
제6조의3	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의3(해외위탁자산운용사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) ①이 약관 시행일 현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노무라자산운용(Nomura Asset Management)이다.  ②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 ③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제6조의2에 의하여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.  ④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제39조제2항에 따른다.</p>
제6조의4	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의4(해외보관 대리인의 선정)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보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  1 제3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  2 제1호의 투자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</p>

		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수탁 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
제39조	제39조(투자신탁보수)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운용회사보수,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 회사 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(이하 “투자신탁보수”라 한다) 는 부과하지 않는다.	제 39 조(투자신탁보수)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운용회사보수,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 회사 보수 및 수탁회사가 취득하는 수탁회사보수(이하 “투자신탁보수”라 한다) 는 부과하지 않는다. ② 제 6 조의 3 에 의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보수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그 자산운용회사의 부담으로 지급한다. 이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보수의 지급방법은 자산운용회사 및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.
제40조	제 40 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 ①투자신탁재산의-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 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<b>1.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</b>  <b>2. 투자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</b>  <b>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</b>  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.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<b>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</b>  7.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. <b>해외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결제 등의</b>	제 40 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 ①(현행과 같음)  ②제 1 항에서 “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<b>1. “해외주식, 해외채권, 해외파생상품” 및 “국내 투자증권등”의 가격정보비용</b> <b>2. “해외주식, 해외채권, 해외파생상품” 및 “국내 투자증권등”의 매매수수료</b> <b>3. “해외주식, 해외채권, 해외파생상품” 및 “국내 투자증권등”의 예탁 및 결제비용</b> 4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5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<b>6.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</b> 7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8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<b>9.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</b>

	<p><u>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</u></p> <p>10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10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p> <p><u>③제 2 항제 8 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<u>④제 2 항제 9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은 수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자산운용회사, 수탁회사,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</u></p>
<p>제40조의 2</p>	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 40 조의 2(해외보관대리인관련비용) 제 40 조 제 2 항 제 10 호에서 규정하는 “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”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건당 결제비용(transaction fee)</u></li> <li><u>2. 보관비용(safe-keeping fee)</u></li> <li><u>3. 기타 부수비용 (out-of-pocket expenses: physical registration, DR conversion, tax reclaim, income collection 등)</u></li> </ol>
	<p><u>신 설</u>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7 년 11 월 20 일 부터 시행한다.</u></p>